

전주교도소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전주교도소 공고 제2026-11호

전주교도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전주교도소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3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근무부서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인턴01 (3명)	행정지원 · 민원서비스	총무과	1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민원과	2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 합격자의 희망부서를 우선 고려하되, 특정 부서에 지원자가 집중될 경우 면접 성적, 관련 전공 및 경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부서를 결정할 예정임.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4.희망부서/1순위 및 2순위 반드시 기재>

가.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5개월 (2026. 4. 20.~2026. 9. 19. 예정)
※ 모집인원 미달 등 채용 일정에 따라 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월 2,156,880원(시급 10,320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근무부서	담당 업무
인턴01	총무과	○ 행사 · 홍보 · 기록물 · 전산 · 구매 등 행정 업무
	민원과	○ 접견 안내 등 민원 행정 업무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예정일) 「청년기본법」 상 청년(19세이상~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② (응시 제한)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주교도소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가 2회 초과인 자

- ※ 단, 횟수제한 시행 이전(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허용
-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청년인턴 참여 이력을 반드시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무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가점: 서류전형에서만 적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인정)

항목	관련 법령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가점 미적용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만 점의 3% 이내 (원수 중복 합산 없음)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은 채용분야의 채용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금번 채용은 해당 채용분야의 모집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 미적용)

3.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1. 청년인턴지원서 2. 가점

-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가 지원한 경우,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인지 여부만 확인하여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3. 19.(목) 예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법무부 홈페이지 및 기관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 및 2차 면접일정 등 공고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교정본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 등)를 참고
-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 질의·응답(인턴지원서 토대)을 통해 평정요소를 상(上), 중(中), 하(下)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 ① 참여의지 및 진로 연계성 : 인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 진로계획과의 연계 정도
- ②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전문성 확보 여부
- ③ 정책제안의 참신·실현가능성 : 정책제안서의 문제 인식,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 질문에 대한 응답의 명확성, 면접 태도
- ⑤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 공무수행에 대한 태도, 책임감, 공정성 등 자세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불합격 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채용공고	2026. 3. 3.(화)~3.13.(금)	-청년인재DB, 나라일터 등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6. 3. 11.(수)~ 3. 13.(금)	-청년인재DB로 제출
서류전형	2026. 3. 18.(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6. 3. 19.(목)	-청년인재DB, 나라일터 등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2026. 3. 20.(금)~	※ 정책제안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정책제안서 제출	3. 26.(목)	
면접시험일	2026. 3. 31.(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불참하여 미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최종합격자 발표	2026. 4. 8.(수)	-청년인재DB, 나라일터 등 공고 (합격자에 개별통보)
채용 예정일	2026. 4. 20.(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원서 교부: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응시원서 등 포함)
- 제출 기간: 2026. 3. 11.(수)~2025. 3. 13.(금) 18:00까지
 - ※ 접수 기간 이후 시스템상 제출 불가
- 제출 방법: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신청
(신청 전 청년인턴DB www.2030db.go.kr 가입 필요)
 -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응시원서 등 포함)을 사용하며, 별도 양식으로 제출 금지
 -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 서류

- 1) 아래 제출 서류 중 공통서류인 ①~④번의 경우,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함
- 2)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
- 3) 서명한 공통서류 전체를 순서에 따라 전체 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필수)	★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서식 제1호> 서식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서식
	② 청년인턴 지원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서식
	④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5호> 서식

	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서식 제6호> 서식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서식
	⑦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별지서식 제8호> 발급방법 참조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확인용
	⑧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해당자만 제출	⑨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⑩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서식 제9호> 서식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⑪ 정책제안서 <별지서식 제10호> 서식 참고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채용유예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도소 총무과(☎ 063-224-4361, 내선204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위 목록과 함께 아래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불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지원·민원서비스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가산요건** : 사회형평대상자(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 ⑦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별지서식 제3호>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ships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직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직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직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전주교도소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전주교도소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2026년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계획 시행에 따름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로 재직</u>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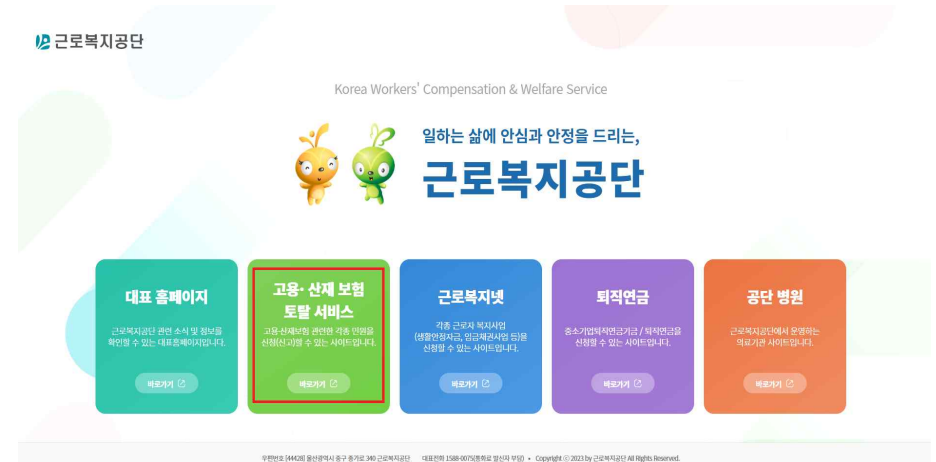
20 년 월 일 (서명)

전주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②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 일반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산재근로자 ☐ 대리인(간이대지급금/임사형구/구상금형의조형/최초요양급여신청·유족

주민등록번호 123456 - *****

☒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간편인증 사업자: 카카오톡,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상상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 드림인증
·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개인 >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탈서비스는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일반근로자] 박정연 님

만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생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자주 찾는 서비스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별 부고고지보 일로 조회

One-Click 산재상당 및 신청

심사청구서 작성

공지사항

안전 장기작업으로 인한 토털서비스 일시중지 계획 알림(2025.01.04)

산재보험 화상인상의료기관 (재)인상 결과 알림

겨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대상기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

겨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대상기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저충금에 관한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환액 및 차환액 고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 원 월 환산액 2,096,270 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가 8시간 포함)

분의사환은 업무 시간 1350

최저임금위원회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Home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마이메뉴 추가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본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구분

○ 산재 ○ 고용

조회구분

● 상용 ○ 일용

조회

이력내역서 발급

직종포함여부

● 예 ○ 아니요

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

신청

메일전송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신청

메일전송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

신청

메일전송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 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2025-7 J
신청인	성명	박	생년월일	년 10월 3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장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별지서식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10호>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성 명		연락처		e-mail	
------	--	-----	--	-----	--	--------	--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